

의안  
번호

56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6. 02. 23.

전문위원 김 동 성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561호
- 다. 제출일자 : 2026. 02. 03.
- 라. 회부일자 : 2026. 02. 11.

###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2022.12.31.)에 따라 구 차원의 세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구만의 특화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실효성이 낮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및 수강료·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특화를 도모함(안 제명)
- 나. 종전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행정협의회 규정은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삭제 및 정비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6조)
- 다.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위촉 분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안 제14조, 제15조)
- 라.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대상,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주민 소통 공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별표 1~3호, 서식 1~3호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2. 26. ~ 2026. 01. 15.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2022.12.31.)에 따라,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구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재정립하고, 구 실정에 부합하는 공동체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서울시 정책과 연계되어 운영되던 기본계획,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등 제도를 정비·삭제하고,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1) 제명 및 안 제1조(목적)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마을만들기’에서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함. 이는 주민 주도의 공동체 형성과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 목적을 재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성격과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2) 안 제2조(정의)

-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등 정책 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다양한 주민 조직과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포용함으로써 공동체 사업참여 기반을 확대함.

#### (3) 안 제6조(기본계획 삭제 및 시행계획)

- 상위 조례 폐지 및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종전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삭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전환하여 정책 운영의 탄력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다만, 중·장기 정책 방향 관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계획 수립 시 중기 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안 제7조~제13조(사업 지원·선정·평가)**

- 사업 절차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관련 용어를 ‘성북형 마을공동체’로 정비함. 이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서 적절하다 사료됨.

**(5) 안 제14조~제18조(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

- 위원회 명칭을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로 변경하고 성별 고려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구성의 균형성을 강화함. 특히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장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공모사업 심사 시 제척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6) 안 제24조~제27조(주민 소통 공간 설치·운영 및 사용료)**

-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 운영 가능 규정을 포함하는 한편, 수강료·사용료의 징수, 감면·환불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현재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소의 주민 소통 공간을 관리하고 있음.

**[주민 소통 공간 시설 현황]**

구 분	시설 현황	비 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직영)	- 성북함께어울림센터(종암로19길 60(종암동))(24.8. 개관) - 508커뮤니티센터(북약산로1길 64(정릉동))(24.8. 개관)	- 기간제 채용(3명)
마을활력소 (지원)	- 정릉함동지 마을활력소(정릉로21길 61-12(정릉동)) -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길음동 길음지하보도 내)	- 정릉함동지(민간마을운영협약) - 길음아지트(민간위탁)

(7) 그 밖의 종전 제8조(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및 제4장(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마을만들기 관련 협의·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던 제도이나, 현재는 구 내부 협업체계로 관련 기능이 대체되고, 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업무가 구 직영체제로 전환됨.
- 이에 따라 조례상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존치할 필요성이 낮아 관련 규정을 정비·삭제한 것으로, 현행 운영 체계와의 정합성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 조례 폐지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성북구 실정에 맞는 마을공동체 정책 체계를 재정립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개정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안 [별표 2]는 주민 소통 공간 수강료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3조(지원 등)<sup>1)</sup>는 감면 가능한 경비를 특정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감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례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 부칙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지원 항목으로 명시하는 ‘타 조례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안 부칙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3조(생략)	제1조~제3조(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